2025년 토목·조경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: 2025. 1. 1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(참고: 간접노무비율, 기타경비율, 일반관리비율, 이윤율,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)

			[간접노무너	[간접노무비] [기타경비]			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	(직노) x 월			4	당사규모 ⁵ 정가격)	(재+노+경) x 율		/L . 74 . Ob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		(재+직노) x 요율 + 기초액			
(작업증사비)			토목 조경 설	산업 설비 토목 3 토목)	산업 경 설비 (토목)	(+3/	714)	토목, 조경, 산업·설비(토목)	전문 공사	(노+경+일) x 율	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				□ 도급자관급자재 포함		<u>(재+직노+도급자관급)</u> x 요율 + 기초액과 (<u>(</u> 재+직노) x 요율 + 기초액) x 1.2 중 작은 금액			
		이하 (183일) 2개월 (365일)	14.3 14.3 1 14.5 14.5 1			5억 대	미만		6.0		구분	요율	요율 구분		요율	<u>산업안전보건</u>	<u> 관리비 대상액^{주)}</u>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
50억 미만	13~36개월 (1095일) 1		14.6 14.6	14.6 6.3	5.0 6.3		12		0.0		토목공사(토건)	0.40		준설공사, 포장공사	0.68			건축공사	3.11	
		초과 (1096일) 이하 (183일)	15.0 15.0 1 14.0 14.0		_	5억 30억 I	미만	6.0	5.5	15.0			토공 산히	당사, 비계구조물해제공사 하수도설비공사, 수중공사		. <u>5</u> 9	<u> </u>	토목공사 중건설공사	3.15 3.64	
50억 -	7~12	2개월 (365일)	14.2 14.2	14.2 6.4	5.2 6.4	309		만			산업·설비공사	0.16	•	보링그라우팅공사 0.51	0.51			특수건설공사	2.07	
300억 미만		3개월 (1095일) 초과 (1096일)	14.3 14.3			50억 I 50억					조경공사	0.18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.32		<u>건축공사</u> 2.28 5 <u>억</u> ~ 토목공사 2.53			2.28	4,325 3,300	
	6개월 이하 (183일) 13.4 13 300억 - 7~12개월 (365일) 13.5 13 1000억 미만 13~36개월 (1095일) 13.6 13			14.7 7.2 6.9 7.2 13.4 6.5 6.2 6.5		100억		마		12.0			조경	조경시설물설치,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, 철도궤도공사			<u> </u>	중건설공사	3.05	2,975
			13.5 13.5			1009	억 -	5.5		12.0			도					특수건설공사	1.59	2,450
1000억 미만				6 13.6 6.9 6.7 6.9 14.1 7.5 7.2 7.5		300역 300 ⁹			-	 	-			철강재설치공사			추정금액 800억 미 만 건설공사	건축공사 토목공사	2.37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 13.3 7~12개월 (365일) 13.4		13.3 13.3			1000억		50	4.5	10.0			그 외 0.10				(주공종이 토목인	중건설공사	3.11	
				13.4 13.4 6.6 6.3 6.6					1 '		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			50억 이상 경우 1,000억) * 제국에 200억 이상		특수건설공사	1.64			
		3개월 (1095일)		13.5 13.5 6.8 6.5 6.8		1000억	이상	이상 4.5	, ,	9.0	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			수성급색 800억 대		건축공사	2.64			
* 기타경비한모 수도	36개월 초과 (1096일) 14.0 14.0 14.0 7.3 7.3 7.1 7.3 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, 여비·교통비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					[세비					구입미뉼 신경	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	상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	토목공사 중건설공사	2.73 3.39	
□ 산업·설비(토목) 해당공종: 수처리시설(오페수, 하수처리, 분뇨처리, 정수장) 등																	경우 1,000억)	특수건설공사	1.78	
[산재보험료]						[환경보전비]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						
(上) x 3.56		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주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	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.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					공사의 종류 요율				공사규모(추정가격) 요율			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: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								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도로(예시: 교량,터널,활주로 등)			0.9	50억 미만 0.081			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: 재료비(도급자관급자재 포함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								
[고용보험료]			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쓰레기소각장 등 지하철			등) 0.4 0.5	50억 이상 - 100억 미만 0.080											
(노) x 월 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 요율				1		철도		1.5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 0.075			* 건설공사의 종류								
[1등급] 1400억 이상 1.57				토목 상하수도(예		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항만		(등) 0.5 0.8	300억 이상 종심·종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 0.071			0.071								
[2등급] 900억 ~ 1400억 미만 [3등급] 570억 ~ 900억 미만				1.30 1.13		1	(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			300억 이상 종심·종평제(건축) 0.0		0.068	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					
[4등급] 370억 ~ 570억 미만			1.06		l —		댐 택지개발		1.1 0.6		턴키·대안공사 0.084									
[5등급] 220억 ~ 370억 미만			1.03			그 밖의 토목공사(하천 등)	0.8	* 적용제외: 전문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			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				
[6등급] 140억 ~ 220억 미만 1.02 [7등급] 고시금액 ~ 140억 미만				조경				0.3	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			- [중건설공사]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								
7등급 미만 1.01				건축	주택(재개발 및 건축 주택(신축			0.7	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-l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뗵[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]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					그 밖의 건축			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		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						
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			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					공사규모 수수료				고제방 댐 공사 등 - 댐 신설공사,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						
	(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/산자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.)				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		(직접공사비) 70억 미만		[직공비x0.0141%]x공기(년)			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-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						
	[건강보험료] [노인장기요양보험료] [연금보험료]			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					70억 이상 - 120억 미만 [100만원+(직공비-75억원)x0.0102%]x공기(년)			· 터널신설공사 등 - 도로, 철도,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								
(직노) x 3.545 (건강보험료) x 12.95 (직노) x 4.5 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 모든 건설공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)					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			[10022.1.10]			/	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							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				120억 이상 - 250억 미만 [150만원+(직공비-130억원)x0.0077%]x공기(년)			- [특수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1) 제1호 '마'목로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경공사							
[퇴직공제부금비]						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				250억 이상 - 500억	250억 이상 - 500억 미만 [240만원+(직공비-250억원)x0.0063%]x공기(년)			/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				
(직노) x 2.3											500억 이상	[[400만원+(직공비-500억원)x0.0050%]x공기(년)			·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방공사업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 비그 - 가츠무과 '과정치에 교내가 스펙티디 처럼라드 트립처에 해하는 교내가 트모고나 즐거워고나가 며벌쳐 가오 웨다 교내 조르는 브로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						※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국가유산 수리공사				*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				비교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중류로 분류 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						
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 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, 간										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				2 건축공사, 토	도녹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현	함께 무내하여 현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	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	영뇌는 공사를 포함		
(단. 공사규모 및 7						- (시행당 제9당) 대행당자계획(대한법물, 플탈법물), 특성당자의 계획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		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, 2024.1.1.)										